

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안 번호	21915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6. 10. 16.

제출자 : 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세 체납자의 거소·수입·재산상황 등을 파악하는 실태확인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확인원의 채용, 비밀유지 의무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압류된 금지금*과 외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매 대신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

중전의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,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」이 제정됨에 따라 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* 금지금(金地金): 금괴·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만분의 9999 이상인 금

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제1호 중 “특별시·광역시”를 “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역시”로, “특별시장”을 “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특별시·광역시”를 “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역시”로, “특별시장·광역시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 본문 중 “특별시세”를 “특별시세·통합특별시세”로, “특별시·광역시”를 “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역시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특별시장”을 “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특별시장”을 “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”으로, “특별시·광역시”를 “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역시”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특별시세”를 각각 “특별시세·통합특별시세”로, “특별시장”을 “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특별시세”를 “특별시세·통합특별시세”로, “특별시장”을 “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특별시장”을 “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5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에 따른다.

제32조의2의 제목 “(실태조사)”를 “(실태확인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2항) 전단 중 “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납세자 관리대장”을 “제1항에 따른 실태확인 결과의 관리를 위한 대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실태조사의 대상·시기·방법”을 “실태확인의 대상·시기·방법·절차, 실태확인원의 교육·감독”으로, “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관리대장의 범위·내용·종류·방법”을 “제5항에 따라 제공하는 관리대장의 내용·방법”으로 한다.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(이하 이 조에서 “실태확인”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
1. 체납자의 거소·수입·재산 상황
2.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
3. 체납자의 체납액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체납자의 체납 원인,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

요한 경우에는 확인원(確認員)을 채용하여 그 확인원(이하 “실태확인원”이라 한다)에게 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.

③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는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61조제3항 전단 중 “요구하여야 한다”를 “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63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제40조 각 호의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

5. 제104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

제71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지

금(金地金)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금지금융통업자에게 매각

4. 「외국환거래법」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통화: 같은 법 제8

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에 매각

제4장(제108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장 벌칙

제108조(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) ① 제32조의2제3항을 위반

하여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압류재산의 직접 매각에 대한 적용례) 제71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압류한 금지금 또는 외국통화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치도지사

2. 전국 단위로 체납액등을 합산하는 경우: 해당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또는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등을 합산한 금액이 가장 많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세조합장

제17조(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그 시·군·구 내의 특별시세·광역시세·도세·특별자치도세 (이하 “시·도세”라 한다)를 징수하여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(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·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. 다만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(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·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)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필요한 경우 납세

2. -----
----- 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역시 -----

----- 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-----

제17조(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) ① -----
----- 특별시세·통합특별시세 -----

----- 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역시 -----

----- 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 -----

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를 발급
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시·도세 징수의 비
용은 시·군·구가 부담하고,
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
특별자치도지사는 대통령령으
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
따른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
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
따라 그 처리비용으로 시·군·
구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
한다. 다만, 해당 지방세와 함께
징수하는 시·도세와 「지방세
기본법」 제9조에 따른 특별시
분 재산세를 해당 지방세의 고
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
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
니한다.

제19조(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
대한 납부의무 면제) ① 시·군
· 구세 또는 특별시세·광역시
세·특별자치시세·도세·특별
자치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
받았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
을 불가피한 사고로 잃어버렸을
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시

-----.

② -----

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-----

--- 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역
시-----

---. -----

-----.

제19조(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
대한 납부의무 면제) ① -----
----- 특별시세·통합특별
시세-----

· 군·구세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, 특별시세·광역시세
· 특별자치시세·도세·특별자치도세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
· 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의무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③ 제2항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시세·광역시세·특별자치시세·도세·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·구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·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게 한정한다)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.

----- 특별시세·통합특별시세-----
----- 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특별시세·통합특별시세-----

----- 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-----

-----.

④ ----- 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-----

-----.

제25조(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)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유예(이하 “고지유예”라 한다) 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(이하 “분할고지”라 한다)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5.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. 이 경우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2항·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.

6. (생략)

제32조의2(실태조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

제25조(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)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

-----, 이 경우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에 따른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에 따른다.

6. (현행과 같음)

제32조의2(실태확인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(이하 이 조에서 “실태

따라 조사(이하 이 조에서 “실
태조사”라 한다)를 실시할 수
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
사 결과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
제1항에 따른 납세자 관리대장
(이하 “관리대장”이라 한다)을

확인”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
1. 체납자의 거소·수입·재산
상황

2.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
부계획

3. 체납자의 체납액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
는 사항으로서 체납자의 체납
원인,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
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확
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
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원(確
認員)을 채용하여 그 확인원(이
하 “실태확인원”이라 한다)에게
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.

③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
이었던 자는 실태확인 과정에서
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
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
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
다.

④ ----- 제1항에
따른 실태확인 결과의 관리를
위한 대장-----

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.

③ (생략)

④ 실태조사의 대상·시기·방법, 관리대장의 관리 및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관리대장의 범위·내용·종류·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1조(무체재산권등의 압류) ①

· ② (생략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(이하 “가상자산”이라 한다)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[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(이하 “가상자산사업자”라 한다) 등 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그 제3자를 말한다]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여야 한다.

---. -----

-----.

⑤ (현행 제3항과 같음)

⑥ 실태확인의 대상·시기·방법·절차, 실태확인원의 교육·감독-- 제5항에 따라 제공하는 관리대장의 내용·방법 -----

--.

제61조(무체재산권등의 압류) ①

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문서로 요구할 수

이 경우 제3자에게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제63조(압류해제의 요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② (생략)

제71조(공매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압류재산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매각할 수 있다.

1. · 2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있다. 이 경우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63조(압류해제의 요건) ①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제40조 각 호의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

5. 제104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1조(공매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지금(金地金)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금지금유통업자에게 매각

4. 「외국환거래법」 제3조제1

③ ~ ⑤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<u>항제2호에 따른 외국통화: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에 매각</u> ③ ~ ⑤ (현행과 같음) <u>제4장 벌칙</u> <u>제108조(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)</u> ① 제3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·징수한다.
---	--

「지방세징수법」 일부개정법률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제32조의2(실태확인)	실태확인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확인원을 채용하여 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
2	제108조(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)	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제32조의2(실태확인)	-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제108조(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)	

2. 상세 사유

- 금번 「지방세징수법」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확인원을 채용하여 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고, 실태확인원이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는 것으로, 법 개정에 따른 예산 수입 증감 추계 곤란

III. 부대의견

- 해당없음

IV. 작성자

- 성명

주무관	사무관(서기관)	과장	실장·국장
배인호	조익현	김정선	이현정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배인호	044-205-3813	wolhasung@korea.kr